



경기도의회 제391회(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768번)

2026. 6. 23.(화)

여 성 가 족 평 생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창희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최효숙 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6. 5. 29.
3. 회부연월일 : 2026. 6. 1.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안이유

- 가. 영유아의 언어·인지·사회성 등 발달과 관련한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발달은 특정 위험군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조기 확인과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음.
- 나. 이에 따라 보호자가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적기에 확인하고 필요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다. 현행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는 발달 지연 또는 발달 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사후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모든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조기에 확인하고 예방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라. 따라서, 경기도가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발달검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전문기관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

달을 지원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발달 지연 예방 및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 지원 중심으로 규정함(안 제1조).
- 나. 영유아의 보편적 발달 지원 및 예방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 계획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신설함(안 제4조제1호, 제5호 및 제6호).
- 다. 영유아 발달 지원 및 발달검사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를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함(안 제8조).
- 라. 발달검사 및 지원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 Ⅲ. 절차 이행

### 1. 입법예고 및 집행부 협의 결과

- 가. 입법예고(2025. 5. 13. ~5. 18.) : 의견 없음
- 나. 집행부 협의
  -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 의견 일부 반영

### 2. 비용추계

- 가. 비용추계 미첨부(의회 예산분석관)

-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IV. 검토의견

### 1. 주요 내용 검토

#### 가. 제안 취지와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발달 지연 또는 발달 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사후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모든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조기에 확인하고 예방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조례의 목적을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 및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 지원 중심으로 개정하고, 발달검사 지원 근거 마련 및 관련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자 제안되었음.
-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발견하고 개입하여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고자 영유아 발달 지원 계획 수립,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 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아이의 성장은 단순한 신체적 성장 그 이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동안 성장하고 발달하며 학습하는데, 발달 지연이란 또래에 비해 하나 이상의 발달 단계에 도달하는 속도가 느린 경우를 말함. 아이들은 각기 다른 속도로 발달함으로 조금 뒤쳐져 있다고 해서 발달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며, 발달 지연이란 특정 연령에 기대되는 기술 발달에서 지속적으로 뒤쳐지는 것을 의미함<sup>1)</sup>.

### 발달 지연의 유형

- 인지(사고) 능력: 인지 능력에는 사고, 학습 및 정보 이해가 포함됩니다. 인지 지연이 있는 어린이는 지시를 따르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사회성 및 정서적 기술: 이러한 기술에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감정 표현하기, 필요를 전달하는 능력 등이 포함됩니다. 사회적 또는 정서적 지연이 있는 아동은 사회적 신호를 이해하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일상의 변화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말하기 및 언어 능력: 말하기 및 언어 기술에는 언어 사용과 이해가 포함됩니다. 언어 및 언어 지연이 있는 아동은 단어를 말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소근육 및 대근육 운동 능력: 이러한 기술에는 소근육(미세 근육)과 대근육(대근육)을 조정하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소근육 운동 지연이 있는 어린이는 손에 물건을 쥐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색칠하기와 쓰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근육 운동 지연이 있는 아동은 뒤집기, 앉기, 걷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본 개정안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 상태를 적기에 확인하고 필요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목적을 재규정하고, 영유아 발달 지원 계획에 보편적 발달 지원 및 예방 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함.

1) 대아소아신경학회, 발달지연 정의(<https://www.cns.or.kr/bbs/diseases/list?category=C>)

## 나. 개별 조문 검토

- 안 제1조(목적)은 기존의 ‘발달 지연을 조기발견하고 개입하여 지원’ 한다는 내용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 지연을 예방’한다는 내용으로 조문을 수정하고 있음.
  - 이는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행 조례가 발달 지연 또는 발달 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사후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모든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조기에 확인하고 예방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전반적인 발달 지원 등으로 수정하여 예방적 지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 목적 규정은 조례가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혀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이를 확대하여 강화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조(정의)제1호에서는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나이를 변경하였는데, 이는 「영유아보육법」의 정의를 본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함.

「영유아보육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안 제2조(정의)제7호와 제8호**는 각각 발달검사와 발달 지원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제시된 용어의 정의는 문제가 없으나, 사회통념상 일정한 의미가 있는 용어로서 정의 규정이 없이도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용어인 경우 그 용어에 대해서는 따로 정의를 할 필요는 없음<sup>2)</sup>.

○ **제4조(영유아 발달 지원 계획의 수립)**에서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지원을 위해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할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발달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보편적 발달 지원 및 예방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다만, **안 제4조안제6호**에서 “영유아의 보편적 발달”을 지원하는 사항을 추가하였는데,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법제과(2994, 2026. 5. 28.)는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을 제기함.

다만 안 제4조 계획 수립 시 ‘보편적 발달 지원 및 예방 정책’의 ‘보편적’이라는 표현이 무차별 수혜를 의미하는지, 또는 취약계층 중심의 상대적 보편성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사업계획 과정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의 구체적 범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 법제처, 법령안입안심사기준 57p

- 본 개정안은 제안이유 및 **안제1조(목적)** 규정을 통하여 경기도가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발달검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전문기관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것을 밝히고 있는 만큼, 본 조문의 “보편적 지원”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됨.

- 현행 조례에 따라 경기도 보육정책과에서 지원되고 있는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sup>3)</sup>의 경우 경기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7세 이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도에 3,951명이 발달지연상담을 받았고, 상담 결과 치료기관에 연계된 대상자는 758명(정서관련 223명, 언어·발달지연 535명)이었음.

○ **안 제5조(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 사업 등)제5호**는 현재 시행 중인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의 사업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안 제8조(홍보)**는 도지사가 영유아 발달 지원 및 발달검사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인식 제고를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는데, 조문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도민”의 경우 현행

3) [붙임]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사업

조례에서 약칭을 정한 바가 없으므로 “경기도민”이라고 자구를 수정해야 함.

- 안 제9조(개인정보 보호)에서는 도지사는 “발달검사 및 지원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고 조문을 신설하였는데, 이 경우 관련 모든 상위 법령을 포괄함으로써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조문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으로 구체화 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2. 종합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모든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여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 다만, 개별 조문 검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 조문에서 체계 자구 정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사업이란?**

경기도 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또는 가정양육 영유아 중 발달 지연이 있는 영유아를 조기 발견함으로써 장애로 발전할 위험을 예방하고 지역사회기관 연계 등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발달상의 어려움이 없는 경우	발달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심층 검사가 필요 없으며 추후 정기적인 선별검사를 실시	영유아의 발달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행동문제	영유아의 사회, 정서, 인지 행동적 문제가 심각하여 발달지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
	📍 교수지원 📍 행동지원 (심리, 정서지원)	📍 교수지원 📍 행동지원 (심리, 정서지원)  📍 부모 상담 후 심층검사 의뢰 📍 치료지원연계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영유아 및 보호자, 보육교직원
- 경기도 내 가정양육 중인 영유아와 보호자

**지원 절차**

